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112

제출년월일 : 9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전국경향각지의 비디오물감상실업, 단란주점등 신종업소의 증가에 따라 이들업소에서 대·소 화재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
-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발생요인이 많으며 화재발생시 대형화요인이 많은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격감시키고자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종전에 호텔, 시장, 백화점, 유흥음식점, 지하의 위생점객업, 지하의 식품점객업, 소극장,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 사용금지하던 이동식난로 금지업소를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까지 확대하는 것임.
- 별칙 :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 제43조에 의거 : 과태료 10만원

3. 근거법령

- 소방법 제13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 : 별첨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노래연습장” 다음에 “비디오물감상실업, 단란주점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